

경영연구소 규정

제정 2021. 10. 1.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(명칭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경영연구소(이하 “경영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** 본 연구소는 경영대학 소속 학과와 관련되는 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경영대학 및 호서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성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위치)**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안에 둔다.
- 제 4 조 (사업내용)** 본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기업경영에 관련된 이론 및 사례 개발
 2.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상담 및 자문
 3. 세미나,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성과 확산
 4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 5. 교내 경영 관련 교양 과목 운영 지원
 6. 학술지 발간사업
 7.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제 2 장 조 직

- 제 5 조 (구성)**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소장
 2. 감사
 3. 운영위원회
- 제 6 조 (소장)**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중임 할 수 있다.
-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- 제 7 조 (감사)**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매년 2월말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다음 각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1. 연구소의 당해연도 예.결산
 2. 연구소 당해연도 사업의 타당성

3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- 제 8 조 (운영위원회)**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 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 9 조 (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.
-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 2. 예산 및 결산
 3. 규정 개정 발의
 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④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- 제 10 조 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총당한다.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 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 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 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제 5 장 폐 소

제11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6 장 기 타

- 제12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(학년도 각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) - 다음해 3월말까지

2. 매 회계년도의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 자료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